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1
2.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3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4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	6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	7
6. 문화재보호법(개정)	10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1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개정)	13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8
1.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8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19
3.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20
4.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21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22
IV. 국외 입법례(근로자의 정신건강보호)	5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개정 `19. 4. 30. 시행 `20. 5. 1.]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 제정이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 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고, 그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화하며,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도태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하도록 함(제17조제8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신설, 제49조제1항).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1 시행 `20.5.12.]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 개정이유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각군 부대와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별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제55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

[개정 `20.2.18. 시행 `20.5.19.]

소관부서 :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5

■ 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 변화가 능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시·도지사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이용자 등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6항·제7항, 제11조의5제3호·제4호 및 제35조제5항제4호·제5호 신설).

다.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6제3호 신설, 제38조제3항제3호).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 `20.2.18 시행 `20.5.19.]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2-200-5622)

■ 개정이유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

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알선행위를 금지하며,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3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7조 및 제22조).

- 마.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수집·보존 등을 하도록 하고,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이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2조).

- 바.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성감정실시기관도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사.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거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24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 신설).
- 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13호·제14호 신설).
-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등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7조의12).
- 차.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사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함(제40조).

문화재보호법

6 [개정 `19.11.26. 시행 `20.5.27.]

소관부서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042-481-4882

■ 개정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

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개정 `19.11.26 시행 `20. 5. 27.]

소관부서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53)

■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인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죽거나 병든 야

생동물의 발견 신고,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 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수렵면허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폐쇄 등의 신고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출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 및 제33조 제6항 신설).
- 나. 환경부장관이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
-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등을 발견한 경우 종전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의 지정,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수행하도록 함(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 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12 신설).
-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6조제7호).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출입제한 명령 또는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 `19.11.26. 시행 `20.5.27.]

소관부서 :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63

■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빛공해방지계획에“를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친화적인“을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

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7.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4.13.]



■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선수, 지도자, 임원)들 간의 민주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제10조, 제11조)
-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제12조)
- 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제16조)
- 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7조~제19조)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및 시행 `20.04.13]



■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선수, 지도자, 임원)들 간의 민주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나.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제4조)
- 다.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제6조)
- 라. 스포츠인권위원회의 심의(제7조)
- 마.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제8조)
- 바.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제10조)
- 사. 협력체계 구축(제11조)



■ 제정이유

-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을 규정함(제4조)
- 다.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을 위한 경비 보조를 규정함(제5조)
- 라.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위탁을 규정함(제6조)
- 마.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을 위한 협조 등을 규정함(제7조)



■ 제정이유

- 무궁화는 오천년을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꽃으로 나라꽃임에도 무궁화에 대한 국민 및 도민들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생활형 무궁화 보급 및 무궁화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제2조)
 - 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제3조)
 - 다. 무궁화 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제5조)
 - 마.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 바. 무궁화에 대한 이해제고와 참여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7조)
 - 사.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과 시상금 지급 규정(제8조)
 - 아. 무궁화 진흥 홍보에 관한 사항(제9조)

1

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의견20-0060, 충청북도 영동군]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영동군수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바, 감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각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목 참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법령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동군수는 예방접종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을 디프테리아(제1호)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제16호)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제17호)으로 장티푸스와 신증후군 출혈열(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 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함)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서는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질병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64조제1항이 영동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바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사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등에게 보조 등을 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영동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영동군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 차. (생략)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략)

③ ~ ④ (생략)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생략)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의견20-0081, 서울시 광진구]

■ 질의요지

-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 가. 질의 가와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제각각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1)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각주: 「지방공무원법」 제1조 참조)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이후에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비율 외의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어느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가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광진구청장”이라 함)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광진구청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34의 비율 보다 더 높은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 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가와 같은 내용을 광진구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광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진구의회의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광진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6. 12. 2. 의견제시 16-0290, 법제처 2019. 6. 10. 의견제시 19-0195 참조)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각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하 같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고용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비율과 범위 외의 근로자 정원에 대하여 어느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나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광진구청장은 광진구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1000분의 34의 비율 보다 더 높은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나와 같은 내용을 광진구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광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진구의회의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광진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 19270 판결 등 참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서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의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 75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준용되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및 「민법」(각주: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이 각각 준용됨) 과 그 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사등은 2019년 이후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000분의 34의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지방공사등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진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등으로 하여금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 이상을 지방공사등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조례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같은 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 다항과 같은 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3. (생략)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8. (생략)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생략)

⑦ (생략)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 ③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

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9. (생략)

②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

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3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의견20-0086, 경상남도 양산시]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또는 용역(이하 “재난기본소득”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양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거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 주민복지 증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제2호가목),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제4호거목)을 시·군·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양산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양산시의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제3조제1호)하면서, “사회재난”을 화재·붕괴·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

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제3조제1호나목)하고 있는바, 재난안전법을 비롯하여 사회재난과 관련된 법률에서 중대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해당 법률에서 이와 같은 명시적인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재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명시하면서, 재난의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내의 주민이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의 특정 요건 없이 관할지역내 전체 주민에게 동일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4조, 제70조, 제70조의3, 제70조의4 등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이나 의료기관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양산시 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회재난 관련 법령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주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 이외의 다른 사회재난 관련 법률에서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등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 제)

-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삭 제)
-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0-0088, 충청북도 보은군]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처리시설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각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함(가축분뇨

법 제2조제4호)) 또는 정화시설(각주: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함(가축분뇨법 제2조제7호))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전제로 한 배출시설과 이미 배출된 가축분뇨를 전제로 한 처리시설의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함)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3항), 축사의 이전 등을 명할 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면서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제4항) 규정하여, 특정 구역에서 가축의 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각주: 법제처 2019. 7. 10. 의견제시 19-0208 참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의 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및 별표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지구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의 이용규제는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대상 및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

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제8조)은 축사 등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며,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의 사육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행위가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 아닌 가축이 배설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5. 4. 의견제시 12-0110 참조)

따라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1. 국내 현황

- 태움 피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연합뉴스 2019.1.10.), 직원·상사 폭언에 사회복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아시아경제 2019.5.24.), 업무 압박을 호소하던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JTBC 2020.1.23.) 등 산업구조가 서비스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치안서비스 등 서비스 업종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근로자 및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업무압박, 업무과다, 과로, 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동료근로자, 고객의 괴롭힘·폭언 등 인(人)적 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3호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건강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호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외사례

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Work Health and Safety Act2011」 「근로보건안전법」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근로보건안전법」 제4조에서 근로자의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별표 3 제5조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및 위해요인으로 ‘심리적 위협의 이용 또는 노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동법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일차적 보호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라 장관은 직업규약(a code of practice)을 승인할 수 있고 승인된 직업규약은 이 법에 따른 의무가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로서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호주 근로안전청(Safe Work Australia)은 모델 직업규약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 직업규약에서는 근로자의 심리적 위해요인으로 과도한 시간 압박, 괴롭힘, 폭력, 과로 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심리적, 정신적, 감정적 요구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법을 살펴서 위해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또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가이드 매뉴얼에서 사업시행자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정신관련 질병을 최소화하도록 조기에 개입하며 회복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일본 「労働安全衛生法」 (「노동안전위생법」)

- 일본은 과로사나 업무압박 등으로 인한 자살이 오랫동안 주요한 사회문제였고 업무나 직장생활에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였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000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침’ 수립, 2006년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 개정, 2009년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 등에 관계되는 업무 이외의 판단 지침’ 개정, 2011년 ‘심리적 부하에 따른 정신장애의 인정기준’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 2014년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제66조의10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의사, 보건사 등에 의하여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스트레스체크제도).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2조의9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스트레스체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의사의 면접지도를 신청한 경우 면접지도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의사는 면접지도를 할 때 근로자의 근무 상황, 스트레스 및 심신 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한다. 면접지도의 결과 및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심야작업 횟수를 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체크 검사결과 등 보고서를 관할 근로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검사통지결과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제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2017-2022)에서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목표수치를 i) 근로자의 직장에 업무상의 불안, 고민, 스트레스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외부 상담 포함)이 있는 비율 72.5%에서 90%, ii) 사업자가 정신건강대책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는 비율 58.4%에서 80%, iii) 사업자가 검사결과를 집단분석하여 활용하는 비율 51.7%에서 60%로 세우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대책을 주천하고 있다.

3. 시사점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근로보건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2011」)은 제4조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별표3 제5조에서 사업장에서의 위험 및 위해요인에 심리적 위험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다.
- 호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시간압박, 괴롭힘, 폭력, 과로 등 근로자의 심리적 위해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 발견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개입하여 정신건강 관련 질병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의10 및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2조의9에서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를 ‘스트레스체크제도’라 하는데,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알게 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검사결과를 집단적으로 분석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건강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 포함함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며 관련 질환 발병 시에 치료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